

서울용산경찰서

제 2015-00095 호

2015. 11. 10.

수신 [REDACTED]

제 목 :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귀(부) 직원에 대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사건번호	2015-005353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자	소속(직위)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성명	피터테일리
처리상황	연월일	2015. 11. 10.
	내용	불기소(죄가안됨) 의견 송치

< 피의사실요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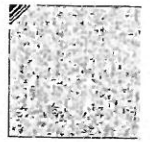
별지 참조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박현상

[Handwritten Signature]



[피의사실요지]

피의자 피터테일리(DALEY PETER ANTHONY)는 숙명여대 교수인 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안된다. 피의자들은 알 수 없는 날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ID 등으로 접속하여 jmscult.com 등 17개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

피의자는 알 수 없는 날짜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ID 등으로 접속하여 jmscult.com 등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모자이크 처리가 되있는 나체 동영상 또는 캡처 사진들을 링크 또는 직접 게시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신체노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